



**라이나손보**

A Chubb Company  
에이스손해보험의 새 브랜드입니다.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대표번호+82 2 2127 2400  
고객센터1566 5800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 Chubb 해외여행보험 III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여행

2. 보험종목의 명칭 : Chubb 해외여행보험 III

3. 보험의 목적

- 1) 동산
- 2) 피보험자의 신체
- 3) 법률상의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 1) 이 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임직원의 직접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함
- 2)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단체계약 특별약관 또는 포괄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에 한해 판매한다.
- 3)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로 함
  -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4)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 ① 대상자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 ② 판매금지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5) 해외여행 실손의료비중 국내치료비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중 국내치료비의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최고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보장종목별로 분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

구 분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한도
기본형	상해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급여		5천만원 이내
특약형	상해비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비급여		5천만원 이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
		주사료	250만원 이내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

6)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의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신규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부가 서비스 등)의 경우,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인수한다.

- ① 카드 가입신청서에 보험가입에 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
- ② 카드회원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체크박스)을 표기함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안내 문구 예시]  
 XX카드는 카드회사가 대표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는 카드회사가 행사합니다.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XX카드가 부담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카드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기존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 서비스 등)의 경우,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내용을 카드회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 인수한다.

7) 아파트 가재 화재손해 및 아파트 가재 도난손해 특별약관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 물건에 한해 판매함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포함), 연립(다세대)주택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아니함

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2) 기타

-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Chubb. Insured.<sup>SM</sup>**